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3072

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:이성배 의원(1명) 차 성 자 :고병국, 권수정, 김

자 :고병국, 권수정, 김경영, 김경우,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김화숙, 김희걸, 노식래, 문병훈, 박기열, 박기재, 박순규, 오현정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3(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
	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
	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
	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
	<u>원을 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2012000000016

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이성배 의원 담 당 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

접 수 일: 2022.01.20

회 신 일 : 2022.01.20 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- 나, 추계결과 = 250,000천원(연평균 50,000천원)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0,000천원으로 연평균 50,000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
 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250,000천원(연평균 50,000천원)
- 총비용 =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비용 ≒ 25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세입	-	-	-	_	-	_	_
세월	소계(a)	-	_	_	-	_	-
세출	우울증 검사 비용 (제4조의3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소계(b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총비용(b-a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
○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= 250,000천원 = 연 50,000천원 x 5년

※ 2022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2 02-2180-7955

e-mail: kjh0123@seoul.go.kr